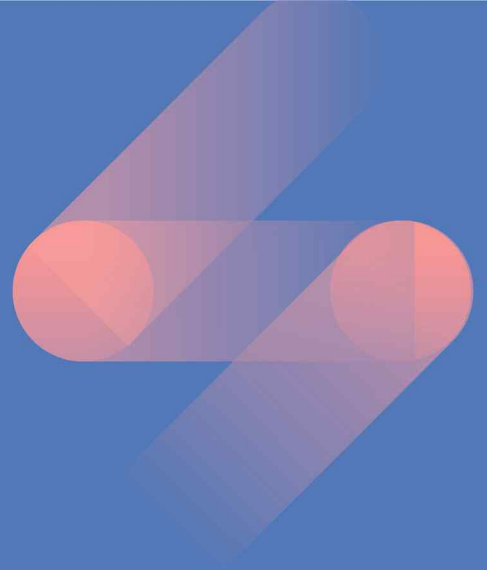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반론보도 사례 01 2024충북조정61 정정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개인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인터넷신문 |
| 처리결과 | 조정성립(반론보도) |

지자체 체육센터 수탁운영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횡령의 혐의로 고용노동청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권익위에서는 수탁운영사의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포함해서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군 체육센터 운영 수탁사인 A 업체가 그동안 제기된 불법 의혹을 해소했다. 지난해 11월 센터 소속 강사였던 B 씨는 이 업체가 임금명세서 상 레슨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가 임금명세서에 레슨비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B 씨는 초등생 대상 의무교육인 '생존수영'의 강습료도 센터에 갈취당했다며 A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사건을 담당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군도 자체 감사를 시행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청이유

공익제보자인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A 업체의 생존수영 관련 보조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청과 교육청에 사건을 이첩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군 특별 감사 결과 주의 4건, 시정 1건, 기타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면서 A 업체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피신청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군에서 실시한 2024년 체육센터 위탁업체 심의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재선정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고발자인 자신은 복직의 기회를 잃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제보를 받은 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까지 확인하고 보도하였으며, 보도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 인정 여부인데 관계기관을 통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이 언급한 지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불법 여부를 가리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제보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았으며 공익제보 이후 A 업체가 또다시 수탁사로 되어 생업유지가 어려워졌다면서 피신청인이 누락한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희망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전혀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권익위원회가 수사당국 등에 이첩한 사실과 해당 수탁사가 모든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담아 반론보도할 것을 권고했다.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보도할 당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 이첩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서 보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재부가 권고한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가 그동안 제기된 ‘불법 업체’ 의혹을 모두 털어냈다.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 강사가 이 시설 수탁업체였던 △△△△(주)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센터 소속 강사였던 B 씨는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이 업체를 상대로 임금명세서에 레슨비 미기재 이유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레슨비까지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임금의 의미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레슨비는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고정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인원도 한 명부터 여러 명까지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불확정적인 특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B 씨는 또 초등생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인 ‘생존수영’에 대해서도 강습료를 센터와 배분함에 있어 갈취당했다며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다.

이번에도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습료 배분은 체육센터와 강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최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국민체육센터 수탁’ △△△△△, 불법 혐의 모두 벗어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 ○○국민체육센터 수탁업체인 △△△△△가 체육센터 소속 강사의 제보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을 모두 벗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측은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업체에 관하여 신고된 일부 내용을 경찰청과 충북교육청으로 이첩하여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반론보도 사례 02 2024경남조정26·27/28·29 각 정정·손배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기초광역자치단체장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
| 처리결과 | 조정성립(반론보도) |

군수의 금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를 지면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인터넷신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도 반론보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군수(A)가 지역 업체로부터 2021년 5천만 원, 2022년 2억 5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받아 해당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예컨대 선거 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군수의 동창이 대표인 업체는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따내는 등 가족 전체가 혜택을 누렸다는 논란이 있다.

또 2022년 선거에서 군수를 도왔던 B 씨는 군수 자녀의 결혼식에 200만 원의 축의금을 내는 등 로비 의혹 등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는데, B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군으로부터 1년여간 1억여 원의 공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승진에 대한 보답으로 군수에게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모 공무원이 진급을 위해 군수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은 후, 5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전달했음에도 승진에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차례나 허위 보도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1,000~2,000명의 군민에게 해당 기사를 발송하여 신청인 자신과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금품수수 의혹을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신청인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 및 정정보도와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심리 중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정보도청구만을 논하는 형태로 조정이 진행됨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은 부정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고, 기사에서 거론된 소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피신청인의 구독자는 150명 남짓인데 1,000~2,000명의 군민에게 발송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 대해 충분히 취재하지도 않고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부는 선출직 공직자의 금품수수 의혹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고 당사자 입장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고 원 보도에 신청인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반론보도는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피신청인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삭제하고 반론보도를 이행할 의향은 있지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제소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제외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하였다.

2차 심리에서 중재부는 양 당사자에게 서로 협의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부제소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② **[전략]** ○○의 경우는 어떨까, 군수와 업자, 공무원들 사이의 크고 작은 비리와 특혜에 대한 의혹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업체는 동종업계로부터 2021년 군수 선거에 5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대고 군청으로부터 무더기 일감을 받았다는 의심을 샀다. 이 업체는 2022년 선거에서는 군수에게 2억 5천만 원을 대고 현재도 ○○군의 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널리 퍼져 있다.

군수와 고등학교 동기인 부부는 군수 선거에 적극 나선 공로로 전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 후, 군수의 동기가 대표로 취임한 건설업체에는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이 집중되었고, 배우자는 관변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부부의 아들은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군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변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중략]**

올해 초에는 2022년 선거에서 군수를 도왔던 B 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었다. 이 고소장에는 B 씨가 2023년 조경회사를 차리고 군수 아들의 결혼식에 200만 원의 축의금을 내는 등의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로비나 청탁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업체가 ○○군으로부터 1년여간 1억여 원의 공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중략]**

승진을 시켜줘서 고맙다며 불법으로 군수 후보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던 공무원은 사실을 묻는 기자에게 “뭘로 엮으려고 그러느냐?”며 당당하기까지 하다. 군수선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전직 공무원은 새로 만든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의 장을 맡아 ‘위인설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후략]**

③·④ **[전략]** 2년여 동안 인사철이면 빠지지 않던 소문도 다시 들려온다. 군청에 근무한다는 만년 팀장(0급) C 씨의 과장진급에 대해서다. 과장진급을 간절히 원했던 C 씨는 A 군수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지만 적다면서 되돌려 받았다. 기왕에 나선 터, C 씨는 여기에 다시 5천만원을 더해 1억원을 전달하고 매번 인사철마다 자신의 승진을 기다렸지만 2년 동안 승진에는 실패했다. **[후략]**

※ 위원회 조정을 통해 지면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가 게재되었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④를 열람차단하였음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군수 선거 유착 의혹 및 인사 잡음>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지난 6월 23일(지면 6월 28일자 2면) 및 6월 30일(지면 6월 28일자 3면) 「금권선거와 ○○, 끊이지 않는 유착의혹」, 「○○군 인사, 더 이상 잡음 없어야」 제목으로 A 군수의 선거 유착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군수는 “지역 업체로부터 선거비용을 받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없으며, 선거 시기 일부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모르고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확인해 반환 조치했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승진 대가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군청에 근무하는 모 팀장이 진급을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며,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로서는 치명적인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지면신문 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①의 부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게재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2건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반론보도문은 글씨체, 박스, 음영처리 등을 통해 원 조정대상보도와 구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단, 계약에 의한 기사 공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섹션에 한함)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인터넷신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반론보도문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03 2024전북조정61/62 각 정정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협회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
| 처리결과 | 조정성립(반론보도) |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한 민간체육단체가 동호인들로부터 납부받은 시설 이용료를 협회 운영기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회원의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시 감사에서 협회 수익금 유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원 보도와 다른 시간대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①·② 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시 △△△협회가 동호인들로부터 걷은 시설 사용료를 멋대로 유용하면서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 감사 결과 환수 처분을 받은 5천여만 원도 납부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③·④ 공공 체육시설 수익금을 시설물 유지에만 써야 하지만 협회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환수 처분을 받은 ○○시 △△△협회가 시에 환수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협회는 다섯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신청이유

신청인 협회는 정산 내역 미공개 관련 보도에 대해 매년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회의 때 각 클럽 회장과 감사, 임원들에게 정산보고를 했고, 일반 동호인들은 각 클럽 대표자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외부로의 자료 반출은 허락되지 않으나 협회 사무실에 방문해 언제든지 정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환수 처분된 5천8백여만 원에 대해 2023년 12월 초 지자체와 협의하여 5회 분납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것인데도 마치 피신청인 보도 ①(2월 1일)이 이루어진 후 신청인 측이 급히 환수를 결정한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 ③(2월 2일)을 방송하여 신청인 협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지자체 환수 조치에 대한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2023년 11월 이후에도 신청인 협회가 납부를 보류한 바 있고, 지자체가 재차 납부를 요청하자 5회 분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놓고 2024년 1월 또다시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신청인 측도

취재과정에서 이를 인정해 ①·②를 보도했고, 보도 다음날 신청인 측이 환수금 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해 그 사실을 알리는 ③·④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협회 회원이 수차례에 걸쳐 회계자료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클럽 임원은 ‘그걸 왜 보려 하느냐’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자체가 감사를 진행 중이라 자료 유출이 불가능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가 감사 종료 후에야 공무원 입회하에 형식적인 열람만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고 피신청인의 보도 또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론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이라면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침 시간대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②

◀ 앵 커 ▶

○○시가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공공 △△장을 지난 10년간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단체가 시설 이용료를 멋대로 사용하고, 회원들에게 회계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5천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한 지자체 감사 결과도 부정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어 어쩌다 주객이 전도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략]**

◀ 리포트 ▶ **[중략]**

지난 2022년까지 ○○시가 △△협회에 위탁한 사업, 동호인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사용료로 걷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 수입을 시설 관리와 상관없는 협회 운영기금으로 8차례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중략]**

2014년부터 재작년까지 지속된 협약서에 따라 사용료는 공원 시설물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하지만, 협회가 마음대로 쓴 겁니다.

간부급 회원에게만 회계장부를 보여주고, 일반 회원에게는 사용료 이용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아 낱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지난해 뒤늦게 진행된 ○○시 감사에서 수익금을 협회 운영 자금으로 정산도 없이 사용하는 등 5천8백여만 원 상당의 유용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민원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물의를 빚은 공무원 12명도 징계와 경고 등 철폐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확정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협회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분할 납부를 약속했다가 협약에 환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 그동안 ○○시에 회계자료를 제출해왔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이냐며 감사 결과마저도 부정하는 겁니다.

[A / ○○시 △△△협회 사무국장]

“회계나 행정감사에서는 다 통과가 돼서 넘어온 사안인데 왜 갑자기 시에서는 다르게 보냐.” [후략]

③·④ 공공 △△△장 수익금을 협회 운영 자금으로 유용해 감사를 받은 민간단체가 지자체에 환수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시 △△△협회는 ○○시로부터 환수조치를 명령받은 5천8백여 만 원 상당의 유용금을 오는 8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2014년부터 재작년까지 지속된 위탁 운영 협약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수익금을 시설물 유지에만 써야 하지만 협회 운영 자금으로 쓴 사실이 지난해 5월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협회, “회계정보 알 수 있다.”

본문내용: 지난 2월 1일자 □□□□□ 뉴스데스크 “힘 좋은 △△△협회? 감사 결과에도 배짱” 및 2월 2일자 5◇◇◇뉴스 “○○△△△협회, ‘환수금 5천 8백만원 납부하겠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협회측은 “일반 회원들도 협회 임원 등을 통하여 회계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환수금액이 많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환수에 응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평일 중에 <□□□□□> 뉴스투데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반론보도 사례 04 2024제주조정1/2 각 반론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고위공무원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
| 처리결과 | 조정성립(반론보도) |

고위공직자인 신청인의 품위 손상 및 업무 태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관련, 신청인의 반론이 자세히 반영된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의 URL을 원 조정대상보도의 하단에 연결한 사례

보도내용

부산 남포동에서 ○○도 정무부지사 A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다. A는 자신을 알아본 기자에게 출장(전시회)으로 부산에 방문했다고 하였으나, 공식 일정에는 그러한 일정이 없었다.

이날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직전이자, A 부지사가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주말이었다. 당시 의회에서는 A 부지사가 예산 협의도 없이 출장을 떠나 비판이 이는 중이었다.

A 부지사는 급박한 예산 정국 속 부산 일정에 대해 ‘개인 일정’이 왜 문제냐며 반문했고, 함께 있던 여성의 신분에 대해 말을 비꼴다가 보름 후에는 해당 여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품위손상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무부지사로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어떤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예산 협의하러 다니냐’며,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는데, 전직 부지사들은 ‘예산 심사에 대비해 휴일에도 대기’하거나, ‘의원들에게 사업별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술한 예결특위 본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는 자신의 소관 업무인 농수축경제위원회 예비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는 당일 오전 11시에는 마이스산업대전에, 오후 2시에는 한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 내부 일정을 제외하고, 지난해 A 정무부지사의 주요 일정은 모두 313건인데 건수만 보면 민선 7기 도정 2년 차 정무부지사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정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다른 읍은 지역색이 열린 행사들이 대다수였으나 A 정무부지사의 고향인 △△읍 관련 일정 12건은 읍민 체육대회나 동문의 날 등 지역 행사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산으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가 없고 ‘어떤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예산협의를 하느냐’라는 발언의 의미 역시 ‘구체적인 예산협의를 실·국장이 1차로 진행하고,

정무부지사의 협의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로 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또 피신청인은 전직 부지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신청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부지사별 업무방식의 차이일 뿐으로 신청인은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여성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성과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어 향후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보도 이전에도, 꾸준히 신청인의 정무부지사 역할 수행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 사건 기사가 다루고자 한 것은 고위공무원인 신청인의 업무 태도의 적절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신청인에게 접촉해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신청인이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사정이 이렇함에도 조정대상보도(①) 이후 신청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공식 입장이 후속보도를 통해 반영되기는 했으나, 원 보도만을 보는 독자도 있기 때문에 원 보도에 반론이 게재되기를 원했다.

중재부 또한 후속보도가 존재하나, 그와 별개로 조정대상보도(②)에는 신청인의 반론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①)에는 신청인의 공식 입장이 담긴 후속보도를 링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해당 제안을 포함하여 작성한 중재부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전략]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부산 남포동의 밤거리입니다.

식당과 노점상들 사이로 중년의 남성이 보입니다.

A ○○도 정무부지사입니다.

한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기대 걷는가 하면, 여성이 A 부지사의 팔짱을 끼고 한참을 걷다 한 극장 건물로 들어갑니다. **[중략]**

우연히 A 정무부지사를 보게 된 □□□ 취재진은 고위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확인차 인사를 건넸습니다.

[A/○○도 정무부지사/지난해 11월 25일 : "(부산엔) 어떻게 오셨어요?) 나, 일 보러왔어요.

(출장이세요?) 네, 네. (무슨 일로요?) 전시회요.”]

그런데 취재결과 A 부지사의 공식 일정에는 출장도, 전시회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시작 전이자, A 부지사가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해외 출장 가기 직전 주말입니다.

같은 시각 ○○도에선 긴급재정 속 7조 2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와 도의회 모두 비상이었습니다. **[중략]**

당시 의회에선 A 부지사에 대해 해외 출장 전 주말과 휴일 이틀이 있었는데도, 예산 협의도 없이 떠났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중략]**

취재진은 A 부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산 정국 부산 일정에 대해 A 부지사는 “개인 일정인데 뭐가 문제냐”며 반문했고, 당시 같이 있던 여성에 대해선 처음엔 부산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다가, 사촌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 보름 뒤 다시 방문한 자리에선 해당 여성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고, “팔짱을 끼거나 품위 손상의 행위는 없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 의회와의 예산 협의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엔, “어떤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예산 협의를 하러 다니냐”며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새해 예산의 최종 조율도 본인이 마지막에 다 한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중략]**

한 전직 부지사는 “예산 심사는 비상시기로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의회에서 부르면 바로 가도록 준비하는 건 기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부지사는 “예결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며 민생예산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략]**

② [전략] [리포트]

해외 출장을 이유로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A ○○도 정무부지사.

도의회 연간 의사일정은 매해 연말 ○○도와 협의해 결정하는데,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열린 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분야인 농수축경제위원회 예비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당일 A 정무부지사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마이스산업대전예, 오후 2시에는 한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A 정무부지사의 주요 일정들을 분석해봤습니다.

회의와 보고 등 ○○도청 내부 일정을 제외한 도내 일정은 모두 313건.

건수만 보면, 민선 7기 도정 2년차 때 정무부지사보다 2배 가량 많습니다. **[중략]**

‘대회’라는 단어가 포함된 일정을 보면 도민체육대회처럼 큰 행사도 있지만, 동지역 어르신 체육대회나 읍면 향우회 성격 단체의 풋살대회 일정도 나옵니다.

주요 일정을 지역으로도 구분해봤습니다.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도내 일정 313건 가운데 동지역이 243건, 읍면이 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동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행사가 많은 도의회나 교육청, 호텔 등이 밀집한 ◇동이 가장 많았고 ○○국제컨벤션센터가 있는 ☆☆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은 ▽▽읍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 △△이 각각 12건이었습니다.
◎◎읍은 ○○<<축제처럼 지역색이 열린 행사들이 대다수였지만, A 부지사의 고향인 △△은 읍민 체육대회나 동문의 날 등 지역 행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① (조정대상보도 ① 관련)

보도제목: [알립니다] 이 기사에 대한 A 전 정무부지사의 반론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문 ② (조정대상보도 ② 관련)

보도제목: [반론보도] <농수축위 예산 심사때도 불출석...“행사 때문?”> 관련

본문내용: 위 보도와 관련해 □□□ 취재진은 보도 전 A 전 정무부지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전 부지사는 보도 이후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의회의 출석 요청이 없는 한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는 정무부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데, 당일에는 특별한 사안도 아니었고 의회의 출석 요청도 없어 참석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면에 게시된 각 조정대상보도 ①, ②의 하단에 반론보도문 ①, ②를 각 게재하되, 반론보도문 ①은 원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공식입장이 반영된 피신청인의 2024. 1. 10.자 보도가 나타나는 링크 형식으로 게재한다.
- 각 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외 동일한 내용의 피신청인 보도에 대해서는 모두 위 조치사항과 같이 조치한다.
- 피신청인은 조치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반론보도문 ①, ②을 각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